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. 2. 8 선고 2022가단120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3. 2. 1.

판 결 선 고 2023. 2. 8.

주 문

1. 피고들과 소외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22. 1. 2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소외 H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별로 각 2/7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. 2. 9. 접수 제12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다만, 청구취지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일자가 2022. 2. 9.로 기재되어 있으나, 이는 기록에 비추어 단순 오타로 보인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고 I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J와 혼인하여 그 슬하의 자녀로 H 및 피고들을 두던 중 2014. 12. 1. 사망하였다. 당시 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 이외에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.

나. K 주식회사(이후 상호가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. 이하 ‘관련회사’라 한다)는 2019년경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3. 27. ‘H은 관련회사에게 9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. 8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(위 법원 2019가소2891568, 이하 위 판결이 표상하는 양수금을 ‘이 사건 양수금’이라 한다)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J와 H 및 피고들은 2022. 1. 21. 고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/6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들은 위 분할협의를 토대로 2022. 2. 9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별로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접수번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H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의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,

관련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와 M은행에 대한 채무 1,700만 원 및 N카드에 대한 채무 119만 원 등을 연체하고 있었다.

마. 관련회사는 2022. 2. 25.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비롯한 미상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H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처인가청 및 O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, 위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(위 채권이 위 분할협의 이후에 양도된 사정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).

나.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, H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으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의 상속분 상당인 2/15 지분(H과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,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과 동일하다고 추정한다)에 관하여,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을 심화시켰으며, 위 분할협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(이를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다).

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H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위 분할협의 체결 당시 H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.

다. 그리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 당시 위 분할협이가 H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 피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나,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피고들이 H의 형제자매로서 H의 경제상황을 잘 알 만한 지위에 있으며, 이 사건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도 ‘H이 피고 F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함’을 알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(이는 오히려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) 등의 사정이 엇보일 뿐이다.

라.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H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[J은 위 각 부동산 중 그의 상속분인 3/15(= 18/90)보다 적은 1/6(= 15/90) 지분만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하였으므로, 위 분할협의 중 J과 사이에 체결된 부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.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취소 대상인 부분을 지칭할 때에도 그대로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].

3.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

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,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.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.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균등한 지분비율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그들의 상속분도 서로 동일하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도 서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별로 각 2/75 지분(= H에게 반환되어야 할 총 지분 2/15 ÷ 피고 수 5명)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여동근

별지